

# 내부고발자와 보호문제에 관한 연구\*

## Whistleblowers and Their Protection Problems

전 수 일 (Jeon, Soo - Il)\*\*

### 논 문 요 약

문민정부에 와서 최고 통치자의 부패척결 의지가 단호할 뿐만 아니라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의사표현의 자유가 신장됨에 따라 조직내의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는 사례가 현저하게 늘어났다. 사익이나 개인의 감정을 떠나 조직내의 부정과 모순을 시정할 목적으로 제 3의 기관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정보를 폭로하는 일은 참으로 용기있고 의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 그런고 하면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내부고발행위로 인한 불이익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정부 공공기관이든 산업체이든 부정의 소지가 발불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의 도움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내부고발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조치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고 다소나마 시민단체에 의존해 있는 형편이다. 이 연구는 내부고발자의 개념규정과 내부고발행위의 요건을 명백히 함으로써 보호받을 대상을 분명히 한계를 지어려고 하며 우리나라의 내부고발 사례를 열거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의 보호입법례 및 민간조직을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역사적 전통에 입각하여 실질적인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하여 입법조치는 물론 개인의 신상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채, 해당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할 책임있는 전담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제의하고 있다.

\* 이 연구는 1998년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해서 이루어짐

\*\*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行·博)

## I. 문제의 제기

군부 지도자들에 의한 30년간의 통치기간이 끝나고 김영삼 문민정부가 출범하자 곧 김 대통령은 부폐척결에 대한 단호한 의지 표명과 공직자 재산 공개 및 금융실명제 등 의욕적인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로써 그는 집권 초창기에 그의 변화와 개혁조치는 국민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어디 한군데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 사회 전체가 온통 부폐의 사슬에 얹매여 중증 환자의 상태에 놓여 있었으니 정상 회복을 위한 각가지 노력은 대다수 국민의 지지 를 얻기에 충분하였다.

어느 국가, 어느 집단을 막론하고 지도자의 의지 여하는 소속 구성원의 의식과 행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비록 김영삼 정부의 5년간의 치적을 평가한다면 처음의 의욕과 기대 와는 정반대로 각가지 부정부폐 사건과 대형사고로 만신창이가 되고 급기야는 IMF 관리체제 하에 놓이게 되었지만 한가지 특징적인 사항은 과거의 어느 정권에서 보다도 내부고발자의 수 가 대폭 늘어났다는 점이다.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의사표현의 자유가 신장된 결과이기도 하려니와 부정부폐를 척결 하겠다는 최고 통치 책임자의 결단과 전체 사회의 분위기가 어우러졌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부정과 비리를 보고도 못본체하거나 야합하지 않고 사회에 이 사실을 폭로하여 공론화 함으로써 전체 사회에 해악을 가져오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용기있고 정 의감 넘치는 사람들이 많이졌다는 사실이다. 특히 문민정부에 와서 크고 작은 부정 비리의 적발은 내부고발자에 의한 폭로나 제보의 도움에서 가능한 것이 많았다. 대충 항간에 물의를 야기했던 사건들을 열거해 보더라도 감사원 감사비리, 보안사 민간사찰, 군 부재자 투표부정, 그리고 학교비리 제보 사건 등이 있다. 그 밖에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국회의원, 감사기관,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 간접적으로 제보해서 대통령 비자금사건 등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백일하에 폭로되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무릇 한 조직이나 사회가 공정성의 논리와 정의가 파괴되어 개개인이 온당하게 대접받지 못하고 부정과 비리가 판을 치게 되면 그 사회는 구성원들 간의 알력과 불안이 가중되어 머지않아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마련이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소수의 양심이 그나마 살아 있을 때 그들의 의로운 행위가 사회의 등불이 되어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정의감과 용기를 가진 자만이 조직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과 모순을 담대하게 고발할 수 있다. 그들은 부정을 외면하거나 그대로 덮어두지 못하고 결국 대외적으로 폭로를 감행함으로써 부정의 세력과 대결한다.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는 것은 참으로 의로운 행위로 추앙받아 마땅하나 오히려 내부고발자는 그가 속한 조직의 차원에서 보면 조직과 상관에 대한 배신자로 낙인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리하여 그는 주변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결국 조직에서 탈락되어 어려운 처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례들을 종종 목격하고 있다(박홍식, 1997b :126~153). 개인과 조직과의 싸움에서 내부고발자는 허약한 존재로서 외로운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 국가사회를 위해서 유익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개 비정상적인 사람이나 바보 얼간이로 치부되기 일쑤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조직 내부의 부정과 비리는 외부로 표출되지 못하고 안으로 풀어 터지는 수 밖에 없다. 오늘날의 부정 수법은 교묘하게 읽히고 섞혀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의 감시 감독체계로서는 부정원을 색출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런 만큼 우리 사회가 부정 부패를 억제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마땅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내부고발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비추어 그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선진 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고찰함으로써 보호입법 제정에 다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우선 문헌 연구와 사례 중심으로 내부고발자의 의의와 요건, 내부고발행위의 사례 그리고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현행 한국의 실태와 미국의 보호입법 제도 등을 살펴 보고 우리나라에 적정한 제도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 II. 내부고발자의 의의와 요건

### 1. 내부고발자의 의의

우리나라에서 내부고발자니 공익정보제공자라는 용어가 통용되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동료의 비행을 상관이나 제 3자에게 일러 바치는 고자질이라는 용어는 옛날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정서상 고발이니 고자질이니 하는 용어는 우리사회에서 별로 달갑게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내부고발자도 고자질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가급적 이 용어 대신에 공익정보제공자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또 혹자는 내비보고자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내부비리 보고자라는 뜻이다(박홍식, 1988. 봄 : 195).

대개 우리 말의 내부고발자는 영어의 'whistle blower'에 해당된다. 즉,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 때의 호루라기는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을 주워 사람들에게 알리는 경고의 도구로서 기능을 한다. 호루라기를 불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끌게 되어 호루라기를 본 사연이 만천하에 공개된다. 조직 내부에 있는 사람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고발이기 때문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지닌다. 내부 비리를 폭로함으로써 이를 시정토록 요구하는 일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일이나 폭로한 당사자로서는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바로 내부고발행위(whistleblowing)이다. 이러한 행위는 내부고발자가 조직상의 명령계통의 내외를 불문하기 때문에 '보고자'라는 호칭은 맞지 않은 것 같다. 고발의 대상은 크게 나누어 (1) 법률위반, (2) 관리부실, (3) 자금낭비, (4) 권한남용 및 (5) 공중보건과 안전에 대한 위험 등을 열거할 수 있다(Bowman, 1983, p. 91).

우리나라에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신문이나 잡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폭로성 기사나 제보형

태를 통해 가시화 되므로써 베일 속에 감추인 비밀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일반 국민은 알 권리와 만족시키고 나아가 기득권층의 관행과 부조리를 혁파하고 장본인을 들추어 내어 망신을 줌으로써 일반국민은 속시원한 대리만족을 느끼게 되었다.

요컨대, 정부 공공기관이나 산업체에서 내부고발자라 함은 소속 구성원으로서 업무를 통해 알게된 내부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리를 시정할 목적으로 제3의 기관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정보를 폭로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 내부의 수치스런 이야기를 다른 기관이나 외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다른 면에서 보면 내부고발자는 조직의 규율을 어기는 배신적 행위로 간주되기 쉽고 그 조직으로부터 철저한 보복을 받을 공산이 크다. 따라서 내부고발자는 개인의 이익 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기 때문에 정의감에 불타고 용기있는 자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는 이외에 양심 선언자라는 것이 있는데 엄격한 의미에서는 차이가 난다.

그러나 여기서는 용어의 개념차이는 접어두고 다음의 내부고발행위의 요건을 살펴보면서 개념의 올바른 정의를 도출하려고 한다. 어쨌든, 밝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명에 투철한 사람들을 국가적으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2. 내부고발행위의 요건

일반적으로 내부고발자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종국에 가서 대중 폭로에 이른다 (Denhardt, 1991 : 121).

첫째, 조직 내부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비윤리적이거나 불법하고 위험한 조직상의 관행과 비리를 우선 인지하게 된다.

둘째, 그는 이 문제를 직근 상관이나 상위직급에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협의한다.

셋째, 그 조직내에서 취한 적절한 조치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면 그는 그 문제를 외부로 끌고 가든지 정부의 감찰기관이나 언론 또는 외부 공익단체에 정보를 누설하기도 한다. 언론기관은 물론 비리 사례를 폭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내부고발자로서 고발행위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무엇보다도 내부고발자는 개인의 어떤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고발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간혹 그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비리를 업고 자신의 비리를 엄폐하거나 모종의 대가를 얻어낼 목적으로 협박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의 내부고발자가 아니다.

둘째, 내부고발행위는 항상 공공의 이익과 결부되어야 한다. 부정과 비리의 관행을 모른채 방치한다면 결국 정부와 산업체는 물론 국민 대다수에게 큰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발행위의 대상이 된다.

셋째, 고발은 충분한 증거와 입증자료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지 소문에 의한 고발은 곤란하다. 특정인에 대한 개인적 감정으로 근거도 없이 중상 모략해서 곤궁에 빠트리는 목적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넷째, 조직 내부에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물론 어느 정도의 노력을 충분하다고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없다. 다만 될 수 있는 한 조직 내에서 만족할만한 시정조치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내부고발자는 윤리성과 공익성에 입각해서 부정과 비리를 교정할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개인의 어떤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조직에 대한 불만이나 반감에서 고발행위를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이 내부고발행위가 구성요건을 갖출 때 내부고발자도 정당성을 부여받고 정부도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 줄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불행하게도 내부고발자는 종종 조직의 상관으로부터 보복을 당하거나 인신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내부고발자의 상당한 수가 해고 되거나 사퇴를 강요당했고 승진이 거부되거나 덜 바람직한 업무를 맡게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조직내에서도 내부고발자로 드러나면 대화의 상대에서 배척, 상관이나 동료들로부터 기피인물로 지목되었다(Truelson, 1986 : 9). 그 결과 부정과 비리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도 고발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많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수준에서 행동강령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부정을 발견하면 이를 폭로하도록 권장한다. 내부고발자 보호는 1978년 공무원제도개혁법을 통해 제공되어 왔다. 더욱이 어떤 기관에서는 반대의견 통로(dissent channels)를 마련하고 정규적인 명령계통 외에 비밀창구를 두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반대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다 자유스럽고 보다 공개적인 반대의견의 통로를 마련하여 의사소통을 활성화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 윤리적 행위를 확보하는 한가지 수단으로 삼고 있다(Denhardt, 1991: 122).

### III. 내부고발행위의 사례

내부고발 행위는 사적 부문에서도 있겠지만 그 규모와 파급효과 면에서 공공부문이 압도적임은 두 말할 나위없다. 이 고발행위는 공공의 이익과 크게 관계된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도 내부고발자라는 용어 보다도 공익정보제보자라는 용어를 쓰고자 하는 의도도 조직내의 비리관행을 들추어 내고자 하는 의로운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실어주자는데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빌미로 개인적인 감정이나 불순한 동기에서 제보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80년대 후반에 와서 민주화의 과정이 진행되면서 부정과 비리를 폭로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만은 틀림없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가 정상으로 자리매김 되려는 징조로 받아들일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70년대 초 낙순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Mosher and Others, 1974)을 계기로 나타났던 만큼 내부고발자 보호조치도 우리 보다 훨씬 앞서 있다. 여기서는 한국의 내부고발 사례를 살펴보고 특히 미국의 내부고발자 보호법률을 검토해 봄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보호법률을 제정하는데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한다.

### (1) 이문옥 감사관의 폭로사건

이 사건은 1990년 5월 11일 당시 감사원 감사관으로 있던 이문옥씨가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재벌기업의 부동산 투기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졌는데도 업계로비와 외부 압력 때문에 감사를 중단했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감사비리를 한겨레신문에 제보함으로써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넘겨져 「직무상 비밀 누설죄」(형법 제 127조)의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다. 그가 구속된지 3년 3개월 여만에 열린 1993년 9월 6일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폭로한 자료는 국가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거나 해당기업에 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것이며 이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얻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할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중앙일보 1993년 6월 17일 22면)고 판시함으로써 이 전 감사관의 무죄를 선고함과 동시에 국가기밀이 아닌 한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판례를 남겼다. 또한 1994년 4월 27일의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도 이 전감사관은 재판부가 “이씨가 미완결 상태의 내부자료를 공개함으로써 …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감사원의 파면처분은 징계권을 남용 … 이씨가 언론에 공개한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실태」는 공개 자체가 정부나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만큼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는 없다”고 함으로써 승소하였다.

### (2) 한준수 군수의 양심선언

이 사건은 1992년 8월 31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을 위한 양심선언의 형식으로 민주당 원내 총무실에서 14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의 관권, 금권 선거사실을 폭로한 것이다. 그는 증거물로 이종국 전 충남지사로부터 받은 선거관련자금증 십만원권 자기앞 수표 90장과 선거지침서 등 모두 21종의 자료와 공문서를 공개했다. 이 사건으로 그는 동년 9월 9일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었다. 정부는 그를 동년 9월 29일 자로 징계 파면했다. 사건 발생한지 2년 3개월여만인 1995년 2월 17일 대법원은 한 전군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 관권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나 …”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의 파면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군수로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여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 금품을 살포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중앙일보 1995년 5월 25일자).

이로써 계층제적 구조에 의한 공직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상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명령을

이행해야만 했던 정황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자유당의 3. 15 부정선거를 연상케 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비난과 불신을 증폭시켰다. 그는 조직의 비리에 대한 양심적 갈등과 선거폐쇄의 책임으로서의 사임압력이 그로 하여금 양심선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던 것이다. 현직 군수라는 직책에 있는 공무원이 행한 양심선언이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정부와 여당은 궁지에 몰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 (3) 전직대통령 비자금 폭로사건

이 사건은 소문으로만 떠들던 전직대통령의 거액 비자금 조성의혹을 민주당의 박계동 의원이 1995년 10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의가 끝난 후 “노태우 전대통령이 정치자금 4천억원을 시중은행에 분산 예치했고 이 중 신한은행에 6백억원이 배당됐다”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폭로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차명계좌 관련자중의 한 사람인 하종욱씨가 평소 안면있는 박계동 의원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부과되는 막대한 세금이 부담스럽다는 내용을 귀띔한데서 비롯된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물증이 제시되어 검찰이 차명계좌 관련자 6명과 이현우 전 청와대 경호실장, 이태진 전 청와대 경리과장장을 소환 조사하고 전금융권으로 계좌추적을 확대하여 10월 26일까지 1천 8백 8억원의 조성액에 잔고 8백 33억원까지 찾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자 노 전대통령은 10월 27일 오전 11시 대국민 사과성명을 통해 재임중 기업인들로부터 성금을 받아 5천억원의 「통치자금」을 조성했으며 남은 돈은 1천 7백억원이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대검 중수부는 수사팀을 확대 개편하여 노 전대통령의 국내외 은닉재산 파악에 나섰으며 11월 1일 오전 10시 결국 노태우 전대통령을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을 비롯하여 30여명의 굴지의 재벌기업들이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아야 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경제정의실천연합」, 「전국민주노조 총연맹준비위원회」,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등 297개 재야 시민단체로 결성된 「5. 18 학살자처벌 특별법 제정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11월 4일을 「국민행동의 날」로 선포하고 노 전대통령 비자금 문제의 올바른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선일보 1995년 11월 1일자).

이러한 과정에서 이미 「검찰의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정으로 휴면상태에 있던 5. 18 문제 가 다시 제기되어 비자금 문제와 맞물려 종교계, 대학가, 재야, 시민단체들의 부정부패척결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물밀듯이 분출되었다. 더욱이 일부의 법률가, 학자들로 구성된 재야단체는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에 접근하여 「부정부패추방 시민연합」 등의 시민단체를 결성하고 「부정부패방지법」, 「내부고발자 보호법」 등의 입법화를 위한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입법청원 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검찰은 1995년 12월 5일 노태우 전대통령 등 3명을 「뇌물수수 및 방조」 혐의로 구속하고 비자금조성 관여자 및 기업체 대표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은행관계자 3명은 약식기소하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일단 수사를 마무리 하였다.

한편 비자금 파문으로 전직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말할 수 없이 추락하고 이미 검찰이

「공소권 없음」이란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12. 12와 5. 18에 대한 국민들의 시위와 여론이 빗발치게 됨에 따라 김영삼 대통령은 11월 24일 급기야 5. 18 특별법의 제정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른 검찰의 수사 재개방침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귀향했던 전두환 전대통령을 검찰은 다음날인 12월 3일 「군형법상의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안양교도소에 전격적으로 구속 수감하였다. 전두환 전대통령 역시 재임 중 9천5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였으며 이중 2천 1백 59억원이 뇌물로 드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노 전대통령 역시 12. 12 및 5. 18 사건과 관련하여 「군형법상의 내란수괴」 등의 혐의가 추가되어 전직 두 대통령이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되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다 (우무정, 1996 : 280~282).

#### (4) 이지문 중위의 선거부정 고발

이 사건은 육군 9사단에 복무중이던 이지문 중위가 1992년 3월 24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일선 부대장들이 자신들의 진급을 위하여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당선시키려고 부하 사병들에게 여당지지를 강요하거나 교육을 시키는 등의 행태를 자행함은 물론 군 부재자 투표과정에서 공개투표, 대리투표, 기표검열 등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공명선거 실천 시민운동 협의회(공선협)」에 폭로한 사건이다. 그 이후 200여명에 달하는 군 부재자 부정투표 사례가 공선협에 접수되었다.

#### (5) 기타 인천축협 김필우씨의 군납비리 폭로

감사원 현준희씨의 효산큰도 특혜사건 폭로, 강서 경찰서 김성환 경장의 상납비리 폭로, 인천 북구청장의 고백수기사건, 사립학교 비리제보등 여러가지 사례가 있다(박원순, 1997 : 172~173).

## IV.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입법례

### 1. 한국의 경우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내부고발자보호법이라는 단독법이 제정되지 못했다. 다만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동 법안의 입법청원(1994년 10월 29일)을 한 바 있었으나 현재까지 성사되지 못했다. 참여연대는 더 나아가 통합법으로서 부폐방지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96년 11월 7일 국회의원 156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을 하였는 바 동 부폐방지법안 제 4장 공익정보제공자의 보호라는 제목하에 14개 조항(제40조~제53조)을 두고 있다(참여연대 : 1997 : 89~91).

그 주요한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대상(제40조)은 공직자와 과거 공직자였던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직내의 부폐행위 및 부폐행위의 의심이 있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자료를 수집하다가 불이익을 받은 자

또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내부 부패행위를 방지하려 노력하다가 불이익을 받은 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둘째, 제보 처리기관 및 조사방법(제42조)을 보면 감사원이 제보 처리를 하기로 되어 있다. 감사원은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는데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감사원은 관계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에 관한 질문서에 답변하게 하거나 구두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 제보의 조사를 각 감독기관 및 관련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보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제보자는 성명, 주소, 연령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더불어 조사대상, 효과적인 조사방법, 부패행위의 구체적인 증거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셋째, 공의정보제공자의 성실의무(제44조). 공의정보제공자는 자신이 소속한 기관의 내부에 정하여진 방식과 절차에 따라 내부 부패행위를 시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그와 같은 방식과 절차를 거칠 때 제보행위가 불가능하여지거나 곤란하게 되는 경우와 내부의 절차로는 시정되지 못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넷째, 신변의 보호(제45조) 및 신분의 보장(제46조), 조사기관은 공의정보제공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된다. 조사 후에도 제공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신원이나 조사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찰 경찰서장에게 그 신변의 안전을 보호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공의정보를 제공하였거나 하려 한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 가해져서는 안된다. 감사원은 제공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 잠정적 구제조치를 할 수 있다.

다섯째, 불이익의 입증책임(제47조). 제공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속기관에서는 제공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여섯째, 조사결과의 처리(제49조). 조사의 결과는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그 내용에는 조사결과 취한 조치와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감사원은 조사의 결과 부패행위의 내용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관찰 검찰에 이를 고발하여야 하며 부패행위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경우에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감사원은 감독기관에 대하여 부패행위를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기타 공의정보 제공에 의하여 손실의 방지 또는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거나 현저히 공의의 중진을 가져온 경우 등 부패일소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53조).

## 2. 미국의 경우

미국 연방수준의 내부고발자 보호는 수정헌법이나 연방법령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제1차 및 제14차 수정헌법이 제공하는 보호조치가 공공부문 종사자에게는 가장 강력하다.

그러나 내부고발자를 위해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마련한 구제책들은 종업원들이 고용주의 법률 및 공공정책의 위반사례를 폭로할 권한과 능력을 고양시키긴 했지만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현행 제도는 아직도 불완전하고 균일성이 결핍되어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의 경우, 내부고발자의 실질적인 헌법상의 권리의 해석하는데 3 단계의 시각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Truelson, 1994 : 287~288).

첫 번째 단계(1950년대 초까지)는 임의고용(employment at - will)의 원리가 적용되는 사적부문의 시각(Private Sector Vision)으로 임의 고용인은 고용주의 해고 위협에 무방비 상태이고 고용주의 강압과 변득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임의 고용원리 하에서는 공공부문이나 사적부문의 고용주의 입장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

두번째 단계(1950년대 초에서 1960년대 후반까지)는 공공부문의 고용주는 헌법상의 제한에 예속된다는 것을 특히 인정하는 개인의 권리시각(Individual Rights Vision)을 반영한 시기다. 바꾸어 말하면, 피고용인은 고용주에 대해서 헌법상의 권리를 갖는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

세번째 단계(1960년대 후반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사적부문 단계에서 발전되어 온 분석을 공익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공정책 시각(Public Policy Vision)을 적용하는 시기다(Developments, 1984 : 1738~39).

그리고 보니 내부고발자 보호는 개인의 권리와 공공정책의 시각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1978년의 공무원제도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 = CSRA)과 1986년의 내부고발자 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 = WPA)은 이들 가운데서 가장 주목할만한 법적 조치이다(박홍식, 1993 : 1189~1193).

### (1) 공무원제도 개혁법(CSRA)

1978년 공무원제도개혁법이 통과됨으로써 내부고발자 규정은 처음으로 임의적이고 차별적 조치로부터 광범한 법률적 보호조치를 내부고발자에게 해 주었다. 의회는 내부고발이 합리적인 인사조치에 도전하는 구실로 될 가능성을 줄이면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이 새로운 법령을 안출해 냈다고 평가하고 있다 (Vaughn, 1982 : 619).

이 목적을 위해서 동법 2301조는 연방 인사관리에서 준수해야 할 9가지 실적제도를 열거하고 있다 (U.S. Congress, Senate, 1978, 18 ; Truelson, 1994, 289). 이러한 원칙들은 경력직 공무원을 모집, 고용, 승진 혹은 해고 과정에서 부당한 입력이나 정실주의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사관리가 차별없이 행하여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공무원 개혁법은 미국 공무원 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 OPM)와 특별조사국(Office of Special Counsel = OSC)을 포함한 실적제도보호 위원회(Merit System Protection Board = MSPB)를 설치함으로써 공무원제도의 구조를 변경했다. 이로써 공무원 개혁법은 내부고발자에게 MSPB와 OSC를 통해서 종합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두 기관은 연방정부의 인사관행이 실적제도 원칙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할 공통된 목적과 책임을 갖고 있다.

OSC는 법률이나 제법령에 위반했다는 정보(즉, 부당관리, 막대한 자금의 낭비, 권한남용 혹은 공중보건과 안전에 실질적이고 특정한 위험 초래 등)를 입수하면 그것을 심사하고 적절한 해당 기관장에게 넘기도록 요구할 수 있다.

MSPB는 금지된 인사행위에 관여한 공무원을 징계할 권한을 갖는다. 징계에는 해임, 강등, 1,000불까지의 범칙금을 포함한다(Congress, Senate, 1978 : 6~7).

### (2) 내부고발자 보호법(WPA)

우리는 앞에서 미국 의회가 연방공무원에게 정부기관의 비행을 보고토록 장려하고 보호함으로써 연방정부의 효능성을 증진하기 위해 공무원제도 개혁법(CSRA)을 통과시켰다고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공무원 개혁법이 처음 의도한 대로 광범위한 보호책을 강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내부고발자 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 = WPT)이 연방정부의 부정, 낭비 및 남용을 폭로하는 연방공무원에게 유용한 보호책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의 내용 중 폭로한 연방정부 공무원의 신변을 보호하며 보복사례에 있어서 증거기준을 증거 우세주의에서 실질적인 증거로 수정한 것은 특기할만한 것이다(U.S. Congress, House, 1987 : 13).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 법은 연방 상소제도의 비용을 불필요하게 인상한 끝이 되었고 복잡하게 만들어 공무원이 합법적인 징계조치를 자연시키고 혼란에 빠지게 한다는 비난도 있다(Truelson, 1994 : 290).

뿐만 아니라 특별조사국(OSC)의 기능이 법률서비스 기관으로서 법을 집행하는데서 개인의 내부고발자 이익을 대표하는 쪽으로 강조점을 옮기다 보니 허위의 불만들을 고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놓기도 한다. 또한 공무원들에게 그들의 거주지역의 순회재판소로 결정한 실직제도 보호위원회(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 = MSPB)에 대해 제소를 허용함으로써 이 법은 각기 다른 지역의 상이한 재판절차 하에서 운영되어지는 공무원 징계제도를 갖는 셈이 된다.

어쨌든 사기업체의 종사자는 WPA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기업체의 내부고발자들은 다양한 연방법규 중의 하나인 반 보복규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다.

### (3) 기타 법규상의 보호조치

내부고발자에 대한 광범한 보호는 1964년의 민권법 제 7장의 실질적인 반 보복규정(Anti - Retaliation Provisions)과 고용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 ADEA)에 의해 보호 받는다. 금지된 보복은 해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고용주의 평상절차와 모순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보복적 소송처리와 같은 고용관계 범위를 벗어나는 보복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 밖에 연방노동법규 등이 보복으로부터 여러가지 상이한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 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 NLRA)은 이 법 하에서 고발하거나 절차상 중언을 한 공무원을 보복에서 보호한다.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 FLSA)은 반

보복규정을 포함하는 연방 고용입법의 두 번째 큰 것이다. FLSA는 고용주의 위법, 고소제기 혹은 행정상의 불평 그리고 허위증언 거부 등과 같은 경우를 보호해 준다.

반 보복규정을 구체화 하려는 연방입법의 또 다른 경우는 직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 OSHA)이다. 이는 OSHA에 소송건을 처리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고용주나 작업장의 안전을 규제하는 다른 기관에 제소하며 불안전한 작업조건을 교정하기 위한 협의회를 두기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OSHA는 고용주가 종업원에 대해서 차별적 행동을 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업원을 대신해서 중재를 하게 된다. 연방 광산안전보건법, 부두노동자법, 그리고 원자력법 등도 반 보복규정에 관한 한 OSHA와 동일한 범주에 듦다.

환경법들도 반 보복 규정을 갖고 있다. 예컨대, 연방수질오염방지법, 자원보존회생법, 유독물통제법, 맑은 공기법, 그리고 개외부개간법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Solomon, 1980 : 278~279).

1986년에 재개된 부정고발법(False Claims Act) 하에서는 개인이 고발을 하게 되면 법무성은 그 내용을 조사하고 그 사건을 떠맡든지 개인더러 기소하도록 하든지 결정을 60일 안에 해야 한다. 만일 내부고발자가 부정고발법을 이용함에 있어 보복을 당하게 되면 그들은 그들의 고용주에게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내부고발자가 그들의 고용주가 보복조치에 간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들은 꽉찬 연공서열로 복직되고 환수금의 2배, 환수금의 이자 그리고 차별의 결과로 받은 손해배상(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 포함)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 밖에 주정부 단위에서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제정한 것은 1981년 미시간 주가 최초이다. 뒤이어 루이지애나, 인디애나, 오크라호마 그리고 오래곤 주에서 각각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법령을 채택 하였다.

미시간 내부고발자 보호법(MWPA)은 공·사기관을 막론하고 고용주가 법률위반에 관해서 당국에 정보를 주었거나 줄려고 하는 종업원에 대해서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특히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MWPA가 제정된 이후 다른 주에서도 점차로 이 분야에 적극성을 띄게 되었는데 35개 주가 이와 유사한 법령을 통과시켰다.

## V.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민간 조직

### 1. 한국의 경우

#### (1) 참여연대 「맑은 사회만들기 본부」

참여연대는 1994년 10월,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집단과 시민 등 300여명을 회원으로 하여 출발한 시민단체이다. 내부고발자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맑은 사회만들기 본부 내의

공익제보자 지원단이다. 원래 이 부서는 참여연대가 창립 당시 내부고발자 보호센터에서 출발하였던 바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패추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내부고발자의 보호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리하여 1996년 1월 '맑은 사회를 열자'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맑은 사회만들기 본부를 출범하여 한겨레신문과의 기획기사 연재, 부패방지법안 마련과 그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하였고 내부고발자 지원센터는 이 본부 안의 '공익제보자 지원단'으로 결합하게 되었다.

현재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지원단이 벌이고 있는 사업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박원순, 1997, 참여연대 : 175~179).

- 가) 부정부패 신고전화 '시민의 눈'을 통한 공익제보자 지원
- 나) 법률 상담실 운영
- 다) 시민 교육과 시민 참여 모임 조직화
- 라) 양심 선언자, 공익제보자들 간의 교류와 상호지원을 위한 사업
- 마) 공익제보자 보호정책 네트워크 구성
- 바) 부패방지법 등 법제화를 위한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 2. 미국의 경우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미국의 민간단체들 가운데 군조달사업본부(The Project on Military Procurement = PMP)와 정부책임사업단(Government Accountability Project = GAP)이 대표적 기구들이다(Truelson, 1994 : 293).

### (1) 군조달사업본부(PMP)

군조달사업본부는 일정 가액 이상의 잉여 부품, 무기 시험과정의 위조, 무기체계의 비용한도 초과, 부정조달 과정 및 잘못된 무기체계를 폭로하는데 수단이 되어 왔다. PMP는 내부고발자를 비밀에 부쳐 둘 책임이 있고 그가 언론, 의회, 국방성에 잘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소송처리 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PMP는 내부고발자에게 가능한 최대의 보호를 제공하면서 개혁을 주도하고 부정행위를 폭로한다. 여태까지 PMP를 통해 부정을 고발한 탓으로 직장을 잃게 된 사람은 없다.

### (2) 정부책임사업단(GAP)

군조달사업본부와 마찬가지로 정부책임사업단(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Project = GAP)도 내부고발자가 보복을 받지 않겠끔 방어해 주고 그의 반대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대표가 불가능한 경우 정보지원과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GAP는 상업적 및 군사적 핵시설 및 육류와 가금조사로부터 안전위협과 같은 특정문제에 전념해 왔다. GAP는 년간 200개 내지 500개의 지원요청을 받고 있지만 매년 약 5개의 새로

운 사례를 채택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재 진행중의 문제 캠페인과 결부된 내부고발자가 대표성의 우선순위를 받는다. GAP의 기본전략은 고립된 내부고발자를 그들의 반대의견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다수의 시민과 결부시키는 일이다. GAP를 통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어떤 사람도 해고되지 않았다(kippen, 1990 ; 박홍식, 1994 :350~359).

### (3) 부정을 반대하는 납세자 모임(TAF)

필립스(John R. Phillips)라는 공익변호사의 주동으로 부정을 반대하는 납세자들의 모임을 결성하였는데 이 시민단체를 '부정을 반대하는 납세자 모임(Taxpayers Against Fraud = TAF)'이라 칭한다. 필립스는 그 때까지 방치되어 왔던 부정고발법(False Claims Act)을 정부계약자들이 부패한 활동을 통하여 정부의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 누구를 막론하고 미국 재무성을 대신하여 그들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러한 활동으로부터 환수한 정부의 돈의 일부를 그 사람에게 보상금으로 주도록 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박홍식, 1994 : 359~365 ; 박원순, 1996 :175)

## VI. 결 론

조직내의 부정, 비리와 관련된 정보를 외부에 공표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천하고 공익에 이바지하려는 내부고발자의 행위는 참으로 용기있고 의로운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직과 상관의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갖가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과거 어느 정권에서 보다도 김영삼 정부에 와서 내부고발자의 수가 많이 늘어났지만 별다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여 오랫동안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물론 미국의 경우에도 내부고발자 보호에 있어서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보호를 위한 입법조치는 보복금지조항 및 보상계획까지 포함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에도 하루 속히 이에 대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내부고발자는 단신으로 거대한 조직과의 외로운 투쟁에서 많은 불이익과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과거 내부고발자들이 부정과 비리에 분연히 일어나 사회에 고발한 이후 그들은 대개 직장에서 해고되고 어려운 가운데 생활을 해 왔고 다행히 복직을 한 경우에도 상관이나 주위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외로운 생활을 해야하는 실정에 놓이게 된다. 재판절차를 거치는 동안 겪은 술한 고통과 어려움을 어디가서 보상 받을 수 있으며 복직된 연후에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행해지는 보복적 행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내부고발자가 해고된 후 복직된 것 만으로 보호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풍토와 역사적 전통을 고려해 볼 때 개인에게 내부고발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공·사부문을 막론하고 조직내의 부정관행이나 인간 생존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사례

를 마음놓고 고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내부고발만을 전담하는 기구를 두고 고발자가 안심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가급적 개인의 신상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고발의 목적이 달성되는 내부고발자의 통로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조직 구성원들의 윤리적 인식과 도덕적 책임감을 조직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리하여 조직의 윤리강령을 확산하고 발전시키는 일, 윤리적 직장과 내부의 이의 표시통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아울러 진행되어야 한다(Truelson, 1991 : Boyle, 1990).

이러한 정책적 배려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내부고발행위의 사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오광석(1997 가을), 내부고발의 적대감과 문제해결에 관한 실증적 연구: 미국 연방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1권 제3호, 241~253
- 우무정(1996), 행정관료의 부정부패와 내부고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논문집」 제43집, 179~182.
- 이기종(1993), 조직에 있어서 부정폭로와 충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고황논집」 제1호
- 박원순(1997), '양심의 호루라기' 보호할 때, 「맑은 사회를 열자」(반부패 정책토론회 모음집), 참여연대 / 한겨레 신문사.
- 박홍식(1993), 내부고발자의 법적 보호 : 미국의 경우, 「한국행정학보」 27(4) : 1185~1201
- \_\_\_\_\_(1994), 내부고발자 보호와 민간단체의 활동 : 미국의 경우, 「한국의 관료론 : 방법과 실제」, 김해동 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서울대 행정대학원
- \_\_\_\_\_(1997a), 내부고발자 보호의 필요성 : 국민안전 및 보건을 중심으로, 「맑은 사회를 열자」 참여연대 / 한겨레 신문사.
- \_\_\_\_\_(1997b), 고난의 A Few Good Men : 내부고발, 고통, 그리고 교훈, 「부정 부패의 사회학」, 이은영 외.
- 박홍식(1998봄), 윤리적 내비보고제(Whistleblowing)의 조건 : 일반규범학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2권 제1호.
- 시사저널(1994. 1. 6), 중앙일보(1993. 6. 17 : 1995. 5. 25), 조선일보(1995. 11. 1)
- Bowman, James S. "Whistle Blowing: Literature and Resource Materials." P&R(May/Jun 1983) : 271~276.
- Boyle, R.D. (1990). A Review of Whistle Blower Protections and Suggestions for Change. Labor Law Journal, 41: 821~830.

- Denhardt, Robert B. *Public Administration : An Action Orientation*, Brooks / Cole Publishing Co., Pacific Grove, California.
- Developments in Law - Public Employment(1984), *Harvard Law Review*, 97:1611~1800.
- Glazer, M. P. and Glazer, P. M.(1989). *The Whistleblowers : Exposing Corruption in Government and Industry*, Basic Books, New York.
- Miceli, M.P. (1992). *Blowing the Whistle : The Organizational and Legal Implications for Companies and Employees*, Lexington Books, New York.
- Mosher, Frederick C. and Others (1974). *Watergate : Implications for Responsible Government*, Basic Books, New York.
- Solomon, L.D. and Garcia, T. D.(1980). Protecting the Corporate Whistleblower under Federal Anti - Retaliation Statutes. *Journal of Corporation Law*, 5 : 275~297.
- Truelson, J.A. (1986). *Blowing the Whistle on Systemic Corruption*,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Los Angeles.
- \_\_\_\_\_ (1991). *New Strategies for Institutional Controls*, in *Ethical Frontiers in Public Management : Seeking New Strategies for Resolving Ethical Dilemmas*, J. S. Bowman, ed., Jossey-Bass, San Francisco.
- \_\_\_\_\_ (1994). *Whistleblowers and Their Protection*, HB of Administrative Ethicsed. ed., Terry Cooper, Marcel, Dekker, New York.
- Vaughn, R.G. (1982). Statutory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in the Federal Executive Branch, *University of Illinois Law Review*, 615~667.
- U. S. Congress, House Committee on Post Office and Civil Service (1987).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7*, H. R. 25,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 C.
- U. S. Congress, Senate Committee on Governmental Affairs (1978). *The Whistleblowers : a Report on Federal Employees who Disclose Acts of Governmental Waste, Abuse and Corruption*,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 C.